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466 제출연월일: 2024. 12. 13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승강기 등의 제조·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·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"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-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- 3.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: 사업을 다시 시작 한 날부터 30일 이내

제39조제4항 중 "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"을 "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-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- 3.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: 사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	제6조(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
수입업의 등록 등) ① ~ ③ (생	수입업의 등록 등) ① ~ ③ (현
략)	행과 같음)
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	4
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	
록을 한 자(이하 "제조・수입업	
자"라 한다)는 그 사업을 폐업	<u>다음 각 호의 어</u>
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	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	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
<u>터 30일</u>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	
신고하여야 한다.	
<u><신 설></u>	1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
	<u>터 30일 이내</u>
<u><신 설></u>	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
	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<u><신 설></u>	3.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
	다시 시작하는 경우: 사업을
	다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
	<u>내</u>
제39조(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	제39조(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
록) ① ~ ③ (생 략)	록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	4
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	
등록을 한 자(이하 "유지관리업	

자"라 한다)는 그 사업을 폐업 ----- 다음 각 호의 어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 터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-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 ----

 - 1. 폐업하는 경우: 폐업한 날부 터 30일 이내
 - 2.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: 휴 업한 날부터 30일 이내
 - 3. 제2호에 따라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: 사업을 다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 내